

국도 17호선 (청주~신탄진)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대책건의(안)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92. 7. 9

발 의 자 : 건설위원장

1. 주 문

- 국도 17호선 (청주~신탄진)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고
 - ※ 국도 17호선 (청주~신탄진간) 교통안전대책 건의(안) 별첨
- 앞으로 국도의 신설 또는 확포장 공사시에는 완벽한 교통안전 대책을 병행 추진토록 건의한다.

2. 제안이유

- 국도 17호선 확포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심각 (현재 도내 11개노선 49개구간 중 교통량이 5위이나 확포장공사 완료시 고속국도 1호선을 이용 청주~대전간을 통행하던 차량이 17호선 국도를 이용하여 운행할 것이므로 노선별 교통통행량 순위가 1위로 부상될것으로 전망
 - ※ 92. 7. 9 제 1차 건설위원회 에서 위원회 발의

3. 참고사항

- ① 국도17호선 (청주~신탄진)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(충청북도 지방 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)

目 次

1. 交通安全對策	-----	93
1) 一般對策	-----	93
2) 主要마을별 安全對策	-----	94
2. 施設別安全對策	-----	96
1) 交通信號機	-----	96
2) 交通安全標識	-----	96
3) 路面表示	-----	97
4) 道路案内標識	-----	97
5) 道路附屬施設	-----	97
3. 交通安全施設設置基準補完	-----	98

國道 17號線 (清州~新鐵嶺間) 交通安全對策(案)

1. 交通安全對策

1) 一般對策

- 工事期間中 工事區間に 危險標識 및 注意標識를 設置하고 기완로구간의 積極적인 安全對策 강구.
- 공사구간에 대해 운전자가 事前 認知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.
-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 및 추월 방지.
- 마을과 마을의 거리가 인접해 있고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로와 인접하여 學校(국민학교 3, 중학교 1, 고등학교(신축중)1)가 있어 步行者와 자전거 또는 경운기가 안전하게 步行 및 運行될 수 있는 人道 및 農路가 차도와 구분, 설치되어야 함.
- 도로를 境界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곳의 신호등(보턴식 및 주기식), 횡단보도(지하도 포함) 또는 點滅燈 설치.
- 高速道路 1호선의 밑을 관통하는 지하도와 확포장되는 도로와 연결되는 청주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운행되는 車輛의 左回轉 및 人馬의 地下道 利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용이 많은 우록리 등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용이 적은곳에서는 점멸등 및 좌우회전 허용표지를 설치.
- 下位道路와 連結되는 삼거리에는 운전자의 시계 확보 및 이지역에서의 서행유도를 위한 교통표지 및 점멸등을 설치하고 아울러 方向豫告標識 및 方向標識를 竝行設置.

- 도로의 확·포장 공사담당기관(건설부 국토관리청:도로확장 및 개보수'고속도로, 국도, 도로관리장비 및 도로표지, 중기의 안전관리)과 도로의 유지 및 교통소통담당기관(관할 경찰국:운전면허 및 교육, 안전표지 및 신호시설, 운전자 및 보행자 지도단속)의 2원화된 도로공사 및 교통관리체계를 건설부로 일원화하여야 함(내무부 관할의 안전표지 및 신호시설 설치부문을 건설부로 이관하여야 함).
- 도로의 확·포장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전문가에 의한 사고가능지역에 사고방지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함.
- 농가가 산재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경운기, 트랙터 등의 농기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農路 겸 人道 및 地下道(최소폭 4m)를 필수적으로 설치함.
- 기타의 구간에서도 최소한 자전거와 리어카, 경운기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함.

2) 主要 마을별 安全對策

· 양촌리

- 양촌교 입구 (점멸등, 최고속도제한)
- 삼작골삼거리 (좌우회전 차선 및 신호등 2곳설치)
- 양지편 앞 (노면요철, 점멸등설치, 인도확보)

· 가좌리

- 대추말 (노면요철, 점멸등설치)
- 아랫말-건너말(지하도 설치)
- 상점말입구(좌우회전 차선, 점멸등설치)

· 수대리

- 앞집거리 (횡단보도, 점멸등)

· 척산리

- 척산삼거리(신호등설치)
- 동편말입구(좌우회전차선, 신호등설치)
- 남이면사무소(마을양측입구 노면요철, 신호등, 횡단보도설치)

· 외천리

- 안골3거리(신호등, 좌우회전차선설치)
- 담안-진바위(지하도설치)
- 양지말(외천국민학교)-옴지말(지하도설치)
- 창말(노면요철, 신호등, 횡단보도설치)
- 외천 IC (신호등, 횡단보도설치)
- 석수정앞(최고속도제한, 좌우회전 차선, 점멸등설치)

· 우록리

- 불목이(XX고등학교 건축중)입구 지하도 앞(신호등, 좌우회전 차선, 횡단보도 설치)
- 갈골입구 지하도 앞 (횡단보도, 점멸등, 최고속도 제한)

· 죽전리

- 선동교앞(신호등, 횡단보도, 최고속도제한)
- 현도면사무소앞 현도중학교(신호등, 횡단보도, 視界確保)

· 매봉리

- 현도국교-새터말(지하도 2곳설치)

※ 기타 道路交通法, 交通安全法, 交通安全施行規則 등에 의거하고 다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.

2. 施設別 安全對策

1) 交通信號機

- 交通信號機設置 및 運營상의 문제점으로 施設基準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.
-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조에서는 신호등의 높이를 일반적으로 4.5 - 5.0m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신호기 설치지점의 地理的 條件이나 運轉者나 步行者의 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.
- 따라서 交叉路 건너편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원칙은 준수하되 視認性提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전방에 主信號機와 같은 週期로 작동되는 步調信號機를 설치하여 교차로 운행의 效率性과 交通安全性을 높여야 함.
- 그리고 교차로 형태나 운행량을 감안한 신호기 설치유형 등에 관한 입법적 보완도 필요함.

2) 交通安全標識

-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표지판의 크기를 필요에 따라 확장·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표준치수로만 설치하고 있어 폭이 넓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이 상대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.
- 또한 交通 및 經濟社會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交通安全標識의 種類도 多樣化 시킬 必要가 있음.

※ 非常時나 각종 도로공사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緊急標識를 補強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작 및 설치기준이 신설되어야 함.

3) 路面標示

- 道路標示에 관한 現行 規程은 路面標示의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, 실제로 實務者가 이 規定을 도로상에 적용하려면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도로면 위에 나타내고자 할 때 부분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전체적인 균형을 잃게됨.
-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交叉點 및 單一路의 路面標示 標準形을 제시하는 실무편람의 내용확대가 필요함.
- 따라서 通行方法規制 路面標示나 進行方向標示 등은 事前豫告의 意味傳達에 重點을 두어 해당 地點到達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反復設置되어야 함.

4) 道路案内標識

- 現행 道路案内標紙中 方向標識(方向豫告標識 포함)등은 거의 交叉點附近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미리 車線方向을 결정하게 해 주는 事前情報提供機能이 不足한 실정임.
- 방향표지가 교차점 전방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事故誘發可能性이 있으므로 이의 改善이 要請되고 있음.
- 운전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위해서는 經路를 따라 표지판을 되풀이해서 複數個를 설치해야 하나 高遠道路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의 보완이 필요함.

5) 道路附屬施設

- 道路管理者가 설치하는 , 防護網, 視線誘導表示, 衝擊吸收施設 등 도로부속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규격기준은 「道路安全施設 設置便覽」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도로의 曲線半徑, 勾配 등에 따른 설치의무규정이 없어 노면포장만 하고 아무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竣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함.
- 우리나라 道路照明施設은 주로 도시간선도로 도심부나 고속도로 들게이트부근에 집중되어 照明施設以外 地域으로 갑자기 進入할 경우 瞬間的인 視覺障礙를 일으켜 交

通事故의 危險이 큼. 따라서 人體特性과 道路特性, 照明施設에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.

- 上級道路와 下級道路가 接續되는 곳의 많은 주의가 요청됨. 하급도로에서 진입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視界確保가 필요함. 또한 충분한 視距의 確保 및 교통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.

3. 交通安全施設 設置基準의 補完

※ 耕耘機, 自轉車 등의 夜光後鑿反射機 設置 義務化

- 우리나라는 車對車事故에 의한 사망자중 25.1%가 추돌사고에 의한 사망자이며 그중 주·정차차량에의 야간 추돌사고 死亡者가 73.6%를 차지하고 있음.
- 夜間 駐·停車車輛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변에 주·정차시킨 차량의 야간 視認性이 불량하기 때문이며, 특히 대형화물차, 경운기, 차전거 등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.
- 야간 주·정차차량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動車, 耕耘機, 自轉車 등의 後部에 夜光反射機 設置를 義務化함.
- 현행 自動車 安全基準은 후부반사기의 面積만 規定하고 個數는 規定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부반사기 개수는 소형자동차는 2개이상, 대형자동차는 4개이상 설치하도록 함.
- 反射機의 反射光은 현행 100m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識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後方 150m의 거리로 확대함.
- 耕耘機, 自轉車 등 自動車以外的 道路上을 운행하는 모든 車馬는 반드시 後部反射機를 설치하도록 製作基準을 明示하고 未附着車馬에 대한 團束根據을 「道路交通法」에 마련함.